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80

발의연월일: 2021. 8. 3.

발 의 자:김홍걸・한준호・강민정

홍정민 · 이학영 · 오영환

김영호 · 서동용 · 양기대

김경만 • 안민석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.

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.

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,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,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통
	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실시
	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	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,
	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
	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
	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공공
	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
	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	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
	에 협조하여야 한다.